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34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1.

3. 회부연월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다만,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본문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 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당시 심의 중인 학교폭력사건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
법”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
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제12조¹⁾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및 피해학생
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또한,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
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및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를 통해 피해학생 등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제2항2)(장애 학생의 보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제1항3)(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건을 심의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다만, 전문가 등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현행법은 장애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제13조제5항⁴⁾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의사 등 관련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보장받을 수 있음.

다만,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현행법 제13조제5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제16조의2제2항(장애학생의 보호)은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임의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사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달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객관적 입장에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과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히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법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⁵⁾

5)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지침)」, p. 84

【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 2제1항). 따라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

- 1)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1)에서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과정에서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92